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26

발의연월일: 2021. 3. 4.

발 의 자: 박상혁 · 문진석 · 김정호

임오경 · 이동주 · 어기구

김윤덕 • 이정문 • 민형배

서삼석 • 윤후덕 • 허 영

김주영 • 박재호 • 진성준

최인호 • 박 정 의원

(17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,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, 조정,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'층간소음 관리위원회'를 설치·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관련 공동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총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총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총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제7항에 따른 자치적인 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20조(층간소음의	방지	등)	1	제20조(층간소음의 방지 등) ①
~ ⑦ (생 략)				~ ⑦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	<u>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</u>
				체와 제7항에 따른 자치적인
				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
				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
				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
				<u>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			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
				따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
				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,
				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
				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
			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
				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